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57 호 2016. 5. 4(수)

고 시

- 제2016 - 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1
- 제2016 - 32호 남해군관리계획(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
- 제2016 - 33호 남해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4

공 고

- 제2016 - 328호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행정예고 8
- 제2016 - 335호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조성사업 환지처분 공고 11
- 제2016 - 347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제2016 - 349호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27
- 제2016 - 353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28
- 제2016 - 357호 2016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고 29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6, 행정 3046)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 - 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피허가자		허 가 번 호	면 적 (㎡)	점용장소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경남 남해군 남면 남면로 ***	이○인	2012-9	1,346	남해군 남면 임포리 1173-50번지선	카약잡안시설	2014.5.01 2016.4.30	2016.5.1 2021.4.30

남해군 고시 제2016 - 32호

남해군관리계획(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남해군관리계획(교통시설 : 주차장)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4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남해군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	주차장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 118-13번지 일원	-	증)3,677	3,677	-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주차장	•신설 A = 3,677㎡	• 금산 보리암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회 군관리계획(주차장)으로 결정코자함

남해군 고시 제2016 - 33호

**남해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또한, 관련 계획으로 경상남도 고시 제2016-140(2016.4.28)호로 결정(변경)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에 대하여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함께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4일

남 해 군 수

-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 결정 조서 : 붙임 참조
-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21,246.7	-	579,421,246.7	100.0	
육지부합계		357,609,682.7	-	357,609,682.7	61.7	
도 시 지 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
	주 거 지 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
	상 업 지 역	소계	183,713.0	-	183,713.0	-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 지 지 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8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4
	관 리 지 역	소계	132,902,347.7	증)23,560	132,925,907.7	22.9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4,169,121.0	증)23,560	44,192,681.0	7.6
생산관리지역		52,359,975.0	-	52,359,975.0	9.0	
계획관리지역		36,373,251.7	-	36,373,251.7	6.3	
농림지역		157,563,335.0	감)23,560	157,539,775.0	27.2	
자연환경보전지역		55,342,717.0	-	55,342,717.0	9.6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3	

※ 기정은 남해군 고시 제2014-77호(2014.10.1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금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임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05번지 일원	농림 지역	보전 관리 지역	23,560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수 감소 및 시설 노후화로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중학교를 조성하여 교육력 제고 및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금회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함

2. 군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	8	519	1	8	519	-	-	-	-	-	-
소로	1	8	519	1	8	519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5	10	집산 도로	8	소로 2-128	학교 구역계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 L=8m, B=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금회 조성되는 학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도로를 신설 결정코자 함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8	꽃내 중학교	중학교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05번지 일원	-	증)23,560	23,560	-	

■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	꽃내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계획시설(학교) 신설 - 위치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05번지 일원 - 면적 : A=23,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수 감소 및 시설 노후화로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중학교를 조성하여 교육력 제고 및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회 학교를 신설 결정코자 함

■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신설	20% 이하	80% 이하	4층 이하	보전관리지역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328호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행정예고

각종 어린이 대상 성범죄로부터 어린이가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남해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CCTV 신설 및 이전』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남 해 군 수

1. 예고명 :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도시공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대상 각종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안전 CCTV 신설 및 이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나. 행정예고 기간 : 2016. 04. 25 ~ 2016. 05. 16(21일간)
- 다. 행정예고 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남해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라. 설치장소 : 아래 참조
-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카메라 설치지 100M 이내, 연중 24시간
- 바. 운영관리 : 남해군 행정과
- 사. 사업내용 : CCTV 19대 신설 및 이전, 관제시스템 1식 구축

○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

순번	현장명	주 소	CCTV 신설		비 고
			회전형	고정형	
1	남산공원	남해읍 화전로 43번길 20-5	2	2	신설
2	스포츠파크공원	서면 스포츠파크길 15	2	2	신설
3	금전공원	상주면 상주리 1376-1	1	1	신설
4	상주수변공원	상주면 상주로 17-4	2	1	신설
5	물건소공원	삼동면 물건리 295	1	2	신설
6	미조항(북항)	미조면 미조리 산 121	1	2	이전
합 계			9	10	19

4.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 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16. 04. 25 ~ 2016. 05. 16(21일간)
- 나. 제출(문의)처 : 남해군 행정과 정보통신팀 (055 - 860 - 3131)
-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우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우 52425)
 - FAX : 055-860-3737
- 라.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해군 방범용 CCTV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4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6 - 335호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조성사업 환지처분 공고

남해군 공고 제2015-969(2015.12.18.)호로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균형개발 및 지방중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분준 공인가된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남 해 군 수

- 사업의 명칭 :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46번지 일원
- 면 적 : 전체면적 1,940,094.7㎡ 중 금회 준공면적 1,331,102.0㎡
- 준공 인가일 : 2015년 12월 18일
- 사업 시행자 : (주)한섬피앤디, (주)사우스케이프
- 공 략 기 간 : 2016. 5. 4. ~ 2016. 5. 18.
- 정리 전·후 토지이용계획표(환지처분내용)

남 해 군 공 보

(12) 제 557 호

2016년 5월 4일

종 별	정 리 전			정 리 후			비 고
	지목	필지수	면 적 (㎡)	지목	필지수	면 적 (㎡)	
총 계		349	1,331,142.0		52	1,331,102.0	
사 유 지	전	73	55,434.0	임	32	426,232.6	
	답	60	65,405.0	도	10	35,452.8	
	과	1	8,414.0	체	10	869,416.6	
	목	6	7,869.0				
	임	167	1,156,934.0				
	대	6	6,755.0				

종 별	정 리 전			정 리 후			비 고
	지목	필지수	면 적 (㎡)	지목	필지수	면 적 (㎡)	
사 유 지	창	1	1,276.0				
	양	8	16,517.0				
	체	13	9,336.0				
	묘	13	977.0				
	잡	1	2,225.0				

- 사업비 정산내역(해당없음)
- 환지청산(해당없음)
-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해당없음)
-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남해군 도시건축과 및 토지개발사업시행자인 (주)한섬피앤디에 비치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347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의 가격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신설
- 나.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신설
- 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시 무게기준 신설
- 라. (제15조)종량제 봉투 등의 가격인상
- 마.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 연락처 : 전화055-860-3263, 팩스860-3707,
e-mail : hellosejong@korea.kr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2016 - 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서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관할구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 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수거하고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민간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지급한 대행료에 대해서 매년 대행계약이 끝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료의 환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 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리·보관·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되,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③ 가정(농업활동 포함)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배출 품목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하며,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군수가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7조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출자 소재과약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지대 단독주택, 도서지역 등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일정 장소와 지정 수거일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당사자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며, 군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 제공 등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의 수집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법 제1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정하여 제작·공급·판매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읍·면장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용 봉투는 공공쓰레기 수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④ 판매소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관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군수가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우
3. 군수가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4. 불법제작 유통된 종량제 봉투를 진열 및 판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업소 확인)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공급대행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관할 읍·면장은 종량제 봉투의 판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읍·면장 또는 대행업체 대표가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 절차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 센터 등이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할 경우 무상 수거 또는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및 운영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 ①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
2. 종량제 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
3. 적정 판매 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업무의 대행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 관련)

[단위:원]

규격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5 l	91	9	100
10 l	182	18	200
20 l	364	36	400
50 l	910	90	1,000
100 l	1,820	180	2,000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수수료(제15조 관련)

[단위:원]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	냉장고	500 l 이상	8,000	
		300 l 이상	6,000	
		300 l 미만	4,000	
2	텔레비전	24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장식대	2,000	
3	세탁기	10kg이상	6,000	
		10kg미만	4,000	
4	냉.난방기	세로형(폭50cm당)	5,000	
		벽면부착용	4,000	
		환풍기(팬)	3,000	
5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3,000	
6	오븐렌지	폭1m이상	4,000	
		폭1m미만	2,000	
7	전자 · 전기 · 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8	가스렌지 후드	모든 규격	2,000	
9	탈수기	모든 규격	3,000	
10	청소기	모든 규격	2,000	
11	난로	모든 규격	3,000	
12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	
13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4,000	
14	VTR, 타자기	모든 규격	2,000	
15	전기장판	모든 규격	2,000	
16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가습기	높이1m이상	3,000	
		높이1m미만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17	선풍기	모든 규격	2,000	
18	전기밥솥(통)	모든 규격	2,000	
19	노트북	모든 규격	2,000	
20	컴퓨터	본체	2,000	
		프린터	2,000	
		모니터	1,000	
		키보드	1,000	
21	팩스기	모든 규격	2,000	
22	전자복사기	모든 규격	3,000	
23	오디오	폭1m이상	4,000	
		폭1m미만	3,000	
		스피커 1개당	1,000	
		장식장	2,000	
24	보일러	모든 규격	3,000	
25	옥매트(건강매트)	모든 규격	3,000	
26	장롱, 옷장	폭30cm당	3,000	
27	침대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8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29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30	문갑	폭1.5m 이상	4,000	
		폭1.5m 미만	3,000	
31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32	서랍장	1단당	1,000	
33	장식장, 찬장	폭1.5m 이상	6,000	
		폭1m 이상	5,000	
		폭1m 미만	3,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34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책꽂이	2,000	
35	파일 캐비닛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36	캐비닛	높이1.8m 이상	5,000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37	싱크대	가로1m 당	2,000	
		찬장 폭1m 당	3,000	
38	간이 소파 (팔걸이 없음)	3인용 이상	4,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39	의자	학생용	1,000	
		업소(사무)용	2,000	
40	피아노	어프라이트	15,000	
		그랜드	20,000	
		오르간	4,000	
41	쌀통	모든규격	2,000	
42	유리종목(거울, 액자)	m ² 당	1,000	
43	병풍	모든 규격	3,000	
44	문짝	0.9m×1.8m당	3,000	
45	자전거	성인용	2,000	
		어린이용	1,000	
46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47	보행기, 붕붕차	모든 규격	1,000	
48	FRP 물통	200 l 당	2,000	
49	PE 물통	200 l 이상	3,000	
		100 l 이상	2,000	
		100 l 미만	1,000	
50	간판	m ² 당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51	세면기, 수족관	모든 규격	2,000	
52	변기	모든 규격	3,000	
53	욕조	모든 규격	5,000	
54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55	카펫	m ² 당	2,000	
56	타이어	소형	3,000	
57	시계	입식용	2,000	
		벽걸이용	1,000	
58	이불	솜이불	3,000	
		홀이불(담요)	2,000	
59	쿠션, 베개, 가방	모든 규격	1,000	
60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1,000	
61	화분	모든 규격	1,000	
62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63	책장	모든 규격	3,000	
64	공사장 생활폐기물	1톤당	30,000	
65	암물박스(물온박스)	4.5m ³ 1대당	60,000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 생활폐기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에 준함.

남해군 공고 제2016 - 349호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군계획 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법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남 해 군 수

○ 공사완료 공고대상 사업

번호	시설명	공사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1	도로	도시계획도로(소로2-34호, 교육청~향교) 개설공사	남해군 아산리 일원	도로개설 L=133m, B=12m,	2015.4.9.~ 2015.11.30.	
2	도로	도시계획도로(2-86호, 청실동산~향교) 개설공사	남해읍 아산리 일원	도로개설 L=100m, B=8m,	2015.06.11.~ 2016.02.11.	

남해군 공고 제2016 - 353호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처분 년월일	비고
						주소	성명		
마을어업 제271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면 상신지선	77,300	2016.4.22 ~ 2026.4.21	남해군 창선면	상신어촌계	2016.4.22	신규 개발
마을어업 제272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면 신흥지선	77,000	2016.4.26 ~ 2026.4.25	남해군 창선면	신흥어촌계	2016.4.26	신규 개발
마을어업 제273호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면 공유지선	292,000	2016.4.26 ~ 2026.4.25	남해군 창선면	공유어촌계	2016.4.26	신규 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6 - 357호

2016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남 해 군 수

1. 2016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가. 공 시 기 준 일 : 2016. 1. 1.

나. 대 상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74번지 외 19,307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 략 장 소 :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남해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6. 4. 29. ~ 5. 30.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후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라.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과세표준팀(☎ 055-860-3463)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